



제342회 임시회  
2015. 9. 2. (수)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5년 6월 23일
- 회부일자 : 2015년 6월 25일

3. 제안이유

- 의료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 관광을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안 제3조)
-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안 제4조)
- 선도 의료기관 선정·지원(안 제5조)
- 의료관광 홍보대사 (안 제6조)

5. 검토의견

□ 조례안 제정 배경

- 의료관광<sup>1)</sup>이란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진

---

1) 의료관광(13 한국의료관광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 의료관광객이 자국의 의료기관 대신 해외 의료서비스(치료 및 의료기술, 건강검진, 미용·성형, 한방진료, 온천 및 대체요법 등을 포함) 혹은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포함하여, 방문 대상 국가의 문화, 사회, 관광상품 등을 체험하는 행위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활동

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함.

- 의료관광은 관광객 체류기간이 길고 체류비용이 높아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의료관광 시장도 2009년 의료법 개정<sup>2)</sup> 및 관광진흥법<sup>3)</sup> 개정 이후 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인정받고 있음.
  - 전국 외국인 환자 유치현황
    - 159,464명('12) → 211,218명('13) → 266,501명('14)
  - 국적별 외국인 환자 :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몽골 순
  - 1인당 평균 진료비 : 208만원('14)
  
- 충북의 경우, 보건복지국 산하 국제의료관광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료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 충북도 내에는 외국인 의료관광 등록 의료기관이 42개소(한의원 4, 치과 4, 병·의원 25, 종합병원 9), 외국인 의료관광 등록 유치업체가 13개소(법인 7, 개인사업자 6)가 있음.
  
- 그 결과 최근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증가율이 전국1위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바, 다양한 관광자원과 결합한 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홍보한다면, 도내 의료관광산업의 성장을 전망해 볼 수 있음.
  - 충북 외국인 환자 유치현황 : 813명('13) → 2,333명('14)
  - 국적별 외국인 환자 : 중국(698명), 러시아(86명), 우즈베크(40명), 베트남(34명), 기타(1,475명)
  
- 이에,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선도의료기관 선정·지원 등의 규정 마련을 통해 도내 의료관광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2) 의료법 개정(2009. 1.30)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 대해서 각각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행위 및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

3) 관광진흥법 개정(2009. 3.25) :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및 보조 규정

## □ 주요 검토 내용

- 안 제1조에서는 의료관광 여건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료관광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시함.
- 안 제2조에서 “외국인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이들에 대해서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 알선·유인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임.
- 안 제3조에서는 의료관광 활성화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함.
-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 내용을 규정함.
  - 제3호의 ‘의료관광 홍보관’은 국내가 아닌 국외에 설치하는 것으로,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의료관광 국외 홍보관’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 ※ 충북도는 현재 3개국(우즈베키스탄, 중국, 몽골)에 ‘의료관광 국외 홍보관’을 설치·운영 중에 있음.
  - 각 호에 명시된 사업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바,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향후에라도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에서는 「의료법」 제27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선도의료기관’으로 선정하여 의료관광 관련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함.
  - “선도의료기관”이란 용어는 도 내 전체 의료기관을 아우르는 포괄적 명칭으로 도민에게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바, “의료관광 선도

의료기관”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조문 체계상 안 제2조(정의)에 “의료관광 선도의료기관”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5조에는 선도의료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선도의료기관 선정기준을 조례로 정한 것은 행정 상 ‘예측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볼 때 일면 타당성이 있으나, 본 사업이 신규사업이며, 지역특성에 부합한 선정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준비 시간이 필요한바, 본 조례에는 공개모집 원칙만 명시하고 선정기준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예측가능성’ 확보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6조에서는 의료관광의 홍보를 위해 의료관광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필요시 분야별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는 바, 본 조례안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며, 별도 규정하더라도 홍보대사 위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 제3조(위촉) ②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의료관광 관련 조사 및 연구를 관련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조항 및 관련 기관·법인, 단체에 자료,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

## □ 종합 검토 의견

- 타 시도의 경우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강원, 경남, 제주 등에서 의료관광 활성화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해외 전시회, 컨퍼런스 개최, 팸투어 실시, 의료관광 전용홈페이지 운영 및 DB구축, 의료나눔 행사 등을 통해 전 방위적으로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음.
  - 특히 인천시와 강원도는 의료관광재단을 설립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충북도 또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시기라고 판단되는 바, 의료관광협의회 구성 및 의료관광종합안내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조항의 추가가 요구됨.
- 또한, 관 중심의 추진은 효율성을 저해할 요소가 있으므로, 의료관광 활성화 업무와 관련한 민간위탁 조항의 추가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이상과 같은 검토 결과, 조례 제정은 시기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의 내용 중 상위법령 위배 등의 문제는 없으나, 앞서 지적한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문맥상 용어 수정 등을 포함해, 아래의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료관광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 한다)”이란 충청북도 소재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 한다)”란 「의료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2조제5호(중전의 제3호) 중 “**전문인력**”이란”을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의료관광 선도의료기관(이하 “선도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료시설·환경·의료 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통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의지와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어 충청북도지사가 선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년**”을 삭제하고,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를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료관광협의회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과 정보교환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 의료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중전의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4조)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을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로 하고, 제1호 중 “**홍보마케팅 활동**”을 “**홍보마케팅**”으로 하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료관광 국외홍보관 설치·운영

4. 의료관광 관련 지식·정보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행사

제5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통역서비스, 픽업서비스 등 외국인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중전의 제5조) 제1항 중 “**「의료법」 제27조의2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된 의료기관으로서 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중심적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이하 “선도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6호에 따른 선도의료기관을 선정하고**”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② 선도의료기관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10%이하를 선정한다.

제6조제3항(중전의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선도의료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중전의 제7조를 제10조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제1항 중 “사람에 대하여,” 를 “국내의 인사를” 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관광 홍보대사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료관광 종합안내 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의료기관, 유치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외국인 의료관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이하 “종합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종합안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의료관광 상담
2. 통역·번역 서비스 연계 및 지원
3. 그 밖에 의료관광 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안내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를 제13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중전의 제7조) 중 “기관” 을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8조) 중 “기관·법인, 단체에게 자료나·의견” 을 “기관  
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2. 제8조에 따른 종합안내센터 운영 업무
3. 제9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교육 업무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의료관광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p>3. “의료관광 <u>전문인력</u>“이란 충청북도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는 외국인환자에게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고, 외국인환자 및 외국인환자와 함께 온 사람의 체류·관광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p> <p>&lt;신 설&gt;</p>	<p>5. ----- <u>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u>“이란 ----- ----- ----- ----- -----.</p> <p>6. “의료관광 선도의료기관“(이하 “<u>선도의료기관</u>“이라 한다)이란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u>의료시설·환경·의료 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통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의지와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어 충청북도지사가 선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u></p>
<p>제3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u>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u></p> <p>1. 2. 3. 4. (생략)</p> <p>&lt;신 설&gt;</p>	<p>제3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 ----- <u>다음 각 호의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u></p> <p>1. 2. 3. 4. (현행과 같음)</p> <p>② <u>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u>&lt;신 설&gt;</u></p>	<p><u>제4조(의료관광협의회 구성·운영)</u> ①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과 정보교환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 의료관광협의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제4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u>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u>홍보마케팅 활동</u></li> <li>2. (생략)</li> <li>3. <u>의료관광 홍보관 등 설치·운영 사업</u></li> <li>4. 그 밖에 <u>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u></li> </ol>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제5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u> --- ----- ----- <u>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 <u>홍보마케팅</u></li> <li>2. (현행과 같음)</li> <li>3. <u>의료관광 국외홍보관 설치·운영</u></li> <li>4. <u>의료관광 관련 지식·정보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행사</u></li> <li>5. <u>통역서비스, 픽업서비스 등 외국인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u></li> <li>6. 그 밖에 <u>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u></li> </ol>

제5조(선도의료기관의 선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의료법」 제27조의2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된 의료기관으로서 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중심적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이하 “선도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관광 관련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선도의료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유치실적 등 사업추진능력 및 사후관리능력
2. 홍보, 외국인 전담인력 등 조직, 시설 현황
3. 그 밖에 의료관광에 필요한 사항

제6조(선도의료기관의 선정 및 지원) ①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6호에 따른 선도의료기관을 선정하고 -----  
-----  
-----  
-----  
-----  
-----  
-----.

② 선도의료기관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10%이하를 선정한다.

③ 선도의료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p><u>제6조(의료관광 홍보대사) ①</u> 도지사는 의료관광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충청북도의 의료관광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u>사람에 대하여, 의료관광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u></p> <p><u>②</u> 홍보대사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u>제7조(의료관광 홍보대사) ①</u> --- ----- ----- ----- <u>국내외 인사를</u> ----- -----.</p> <p><u>②</u> 제1항에 따른 의료관광 홍보대사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u>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u>」에 따른다.</p>
<p><u>&lt;신 설&gt;</u></p>	<p><u>제8조(의료관광 종합안내 센터 설치·운영) ①</u> 도지사는 의료기관, 유치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외국인 의료관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이하 “<u>종합안내센터</u>”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u>②</u> 종합안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의료관광 상담</u></li> <li><u>2. 통역·번역 서비스 연계 및 지원</u></li> <li><u>3. 그 밖에 의료관광 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u></li> </ol> <p><u>③</u>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p>

	<p><u>안내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제7조(조사 및 연구)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u>관련 기관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u>할 수 있다.</p>	<p>제10조(조사 및 연구)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u>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u>할 수 있다.</p>
<p>제8조(관련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u>기관·법인, 단체에게 자료나·의견 제출</u>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11조(관련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 ----- ----- <u>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u> ----- -----.</p>
<p><u>&lt;신 설&gt;</u></p>	<p>제9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u>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등을 지원</u>할 수 있다.</p>
<p>제9조 (생 략)</p>	<p>제13조 (현행 제9조와 같음)</p>



<p>&lt;신 설&gt;</p>	<p>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u>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u>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u>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u>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u>업무</u></li> <li>2. 제8조에 따른 <u>종합안내센터 운영 업무</u></li> <li>3. 제9조에 따른 <u>전문인력 양성 교육 업무</u></li> <li>4. 그 밖에 <u>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u></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p>
<p>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의료관광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p>

# 관계법령 발췌

##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② (생략)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

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의료관광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의료관광이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

제2조(임무) 충청북도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북도(이하 “도” 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도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도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 ②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주관부서에서 공보관실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④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총괄 및 운영) 홍보대사관련 업무 총괄은 공보관이 담당하되, 운영은 공보관실과 사전에 협조하여 사업주관 부서에서 한다.